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윈스테크넷
○ 대상장비 및 S/W : Sniper ONE-d 4300,Sniper ONE-i 4300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「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」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₩10,270,200원(VAT 포함)로 한다.**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**화성시청**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**㈜윈스테크넷**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데이터텍
○ 대상장비 및 S/W : 완전삭제(EDE V4.0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**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**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₩4,257,500원(VAT 포함)로 한다.**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18일

발 주 기 관 명 화성시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데이터텍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이글루코퍼레이션
○ 대상장비 및 S/W : 통합보안관리(Spider TM v5.0, Agent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「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」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₩13,041,600원(VAT 포함)로 한다.**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화성시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이글루코퍼레이션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지니언스㈜
○ 대상장비 및 S/W :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(NAC) 센서 및 정책 서버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**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**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₩15,937,400원(VAT 포함)로 한다.**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**화성시청**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**지니언스㈜**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컴트루테크놀로지
○ 대상장비 및 S/W : Privacy Center(PVC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₩4,150,500원(VAT 포함)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화성시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컴트루테크놀로지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.공급사 : ㈜모니터랩
○ 대상장비 및 S/W : 웹방화벽(AIWAF-1000_Y20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.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.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₩5,044,900원(VAT 포함)로 한다.**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.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.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화성시청 (인)

제조사.공급사명 ㈜모니터랩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아란타주식회사
○ 대상장비 및 S/W : 원격지원(WIZ Helper), 온라인 용역통제 라이선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₩7,663,200원(VAT 포함)로 한다.**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화성시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아란타주식회사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.공급사 : ㈜피앤피시큐어
○ 대상장비 및 S/W : DB보안(DBsafer V7.0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.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.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₩5,834,100원(VAT 포함)로 한다.**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.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.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화성시청 (인)

제조사.공급사명 ㈜피앤피시큐어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시큐아이
○ 대상장비 및 S/W : UTM(BLUEMAX NGF 2000), BLUEMAX NGF 500 BASIC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₩9,632,300원(VAT 포함)로 한다.**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화성시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시큐아이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**
○ **발주기관 : 화성시청**
○ **제조사·공급사 : ㈜휴네시온**
○ **대상장비 및 S/W : 망간자료전송(i-oneNet v5.0)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「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」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₩6,113,200원(VAT 포함)로 한다.**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**화성시청**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**㈜휴네시온**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제이테크브릿지
○ 대상장비 및 S/W : PCFilter v3.0, PF PrintSecu v3.1,
PC Filter v3.1, PF PrintSecu v3.1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₩36,120,200원(VAT 포함)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화성시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제이테크브릿지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제이테크브릿지
○ 대상장비 및 S/W : WEEDS Black Box Suite V2.0,WEEDS Black Box Suite (WAS-Trace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₩33,783,400원(VAT 포함)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화성시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제이테크브릿지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
○ 발주기관 : 화성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안랩
○ 대상장비 및 S/W : 방화벽 (안랩 TG-5000B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「2027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」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₩10,730,100원(VAT 포함)로 한다.**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09월 일

발 주 기 관 명 **화성시청**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**㈜안랩** (인)